

의안번호	2125374
의 퇴 인	김진표 의원
회 답 일	2023.11.22.
추계번호	23B4716

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)	•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(제1항) 1.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.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3.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,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	의무규정
		•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가액을 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됨(제2항)	의무규정
		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,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		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5항) 1.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.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9조(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)	•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·고시에 관한 절차는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름(제1항) •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·고시에 관한 절차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에 따름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2조 (통합국제공항건설 추진단)	•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을 둠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3조 (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)	•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4조 (정부의 재정 지원)	•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5조 (부담금의 감면 등)	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7조 (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)	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.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.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20조 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	•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21조 (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)	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음. 이 경우 전환의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를 따름	재량규정
11	안 제24조 (보고·검사 등)	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(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함)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제정안은 수원시에 위치한 군 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

조금 인상(안 제7조제3항),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(안 제7조제4항),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·용자(안 제14조), 부담금의 감면(안 제15조)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 및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의 주요 사업 구분

구 분		사업시행자	사업계획 승인
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(안 제8조)	군 공항 이전사업	수원시장, 화성시장 (이전 시 경기도지사의 조정)	국방부장관
	공항개발사업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	국토교통부장관 (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)
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(안 제7조)	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	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	미 규정
종전부지 개발사업 (안 제5조)	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사업 (별도 제정안)	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	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(국무총리 소속)

□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(안 제7조 및 제8조 등)

-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의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,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및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,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, 남은 금액이 있으면 국가에 귀속시킴
- 이는 현행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¹⁾의 기부 대 양여

1)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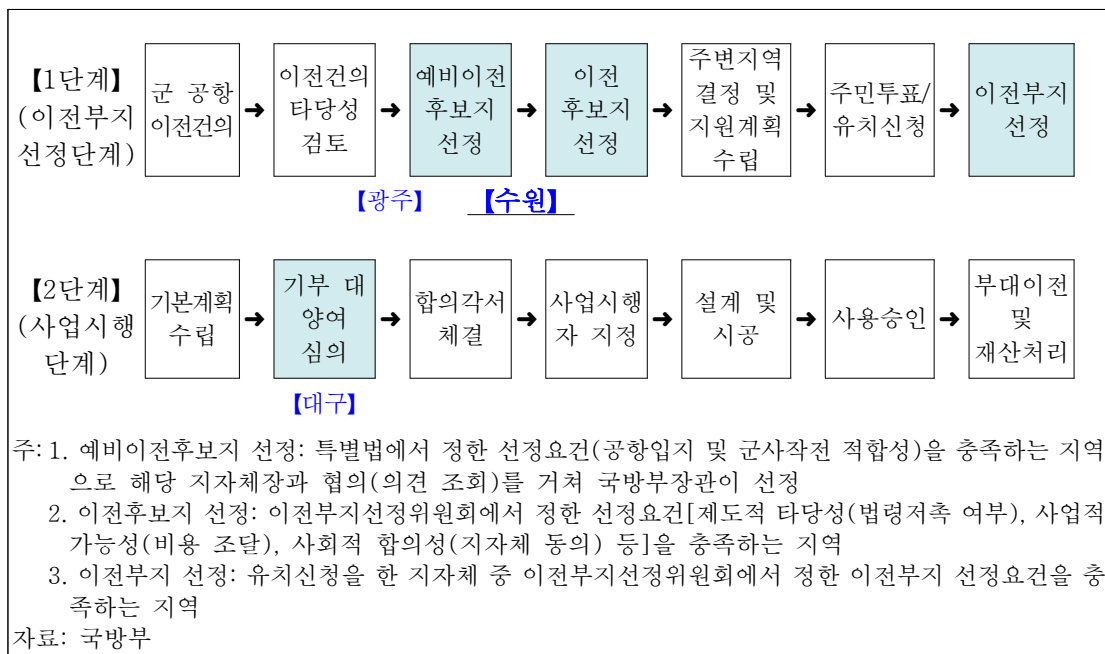
제9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이전사업은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(기부채납), 제55조(양여)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.

② 사업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방식을 따르는 것으로, 현행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의 재산가액에서 신규 건설 군 공항 건설비용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행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

- 다만, 제정안은 종전 부지의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행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보다 넓히고 있고,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(안 제14조)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
- 국방부에 따르면,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현재 수원, 대구,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 중으로, 수원과 광주는 이전부지 선정 단계에 있고, 대구는 사업시행 단계에 있음

[표 2]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



- 다만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, 현재는 예비 이전후보지(화성시 화옹지구) 선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, 군 공항 이전사업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, 제정안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·용자의 필요성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[표 3]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

경기도	·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('23.7.18) - (목적) 국제공항 경기도 유치 및 건설 촉진 - (내용) 지원계획 수립, 자문위원회 설치
수원시	·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('14.11.17) - (목적)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설치 및 시민협의체*의 지원 * (구성)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지역주민, 시의원 등
화성시	·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조례('17.10.16) - (목적)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- (정의) “범시민운동”: 자발적 군공항 이전반대 운동

자료: 국토교통부

□ 공항개발사업(안 제8조 등)

- 제정안은 공항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을 두고(안 제12조), 통합국제공항 건설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(안 제11조)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는(안 제21조)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그러나 공항개발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가 정해진 이후에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, 현시점에서는 '17.2월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일원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어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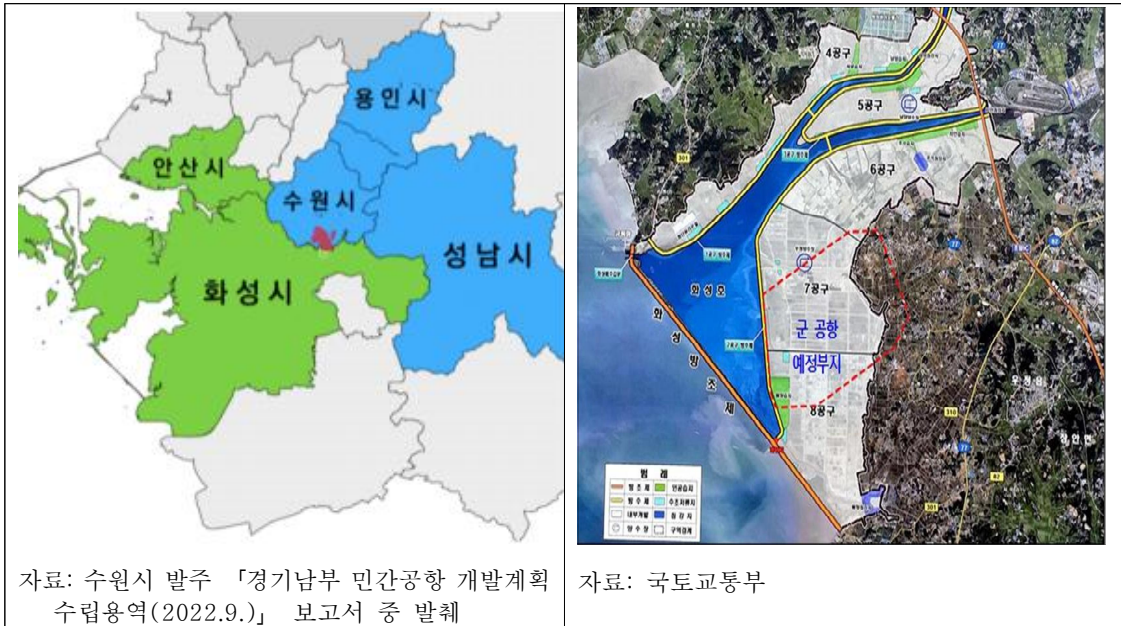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수원 군 공항 현재 위치(左, 빨간 부분) 및 예비 이전 후보지(右, 점선부분)



[참고자료 2] 수원시 발주 「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」 에
따른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추정 비용

- (주)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원시에 제출
(2022.9.)한 「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」 에서 추정한 경기남
부 민간공항 건설 추정 비용은 다음과 같음

(중략)

-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방안은 신설 군 공항을 이용하여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별로 건설하는 방안과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존재함
- 따라서, 공항의 규모를 산정 시 다음 세가지 방안으로 사업비를 비교 분석 하도록 함.
 - 방안1. 신설 예정인 군공항을 이용하여 민간공항 설치하는 1단계 건설(안)으로 활주로 및 유도로는 군 공항 이용하고, 경기남부 민간공항 전용 연결유도로, 계류장, 민항용 항행안전시설 추가 설치
 - 방안2. 2단계 확장(안)으로 군 활주로 이용 + 제3활주로 (독립계기비행 활주로 이격 4,300ft)를 추가로 건설
 - 방안3. 경기남부 민간공항 독립 신설(안)으로 군 공항과 별개로 활주로, 유도로, 계류장,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 1식 신설
- 경기남부 민간공항 독립 신설(안)은 수원공항이 이전되지 않을 시 공역 및 항로의 문제로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본 과업에서는 독립 신설 방안의 사업비를 단계별 사업비와 비교 검토용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산출

(이하 생략)

자료: 「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(2022.09.)」, 130쪽

■ 1단계 건설 안(군 활주로 이용) 소요사업비

■ 표 5-1 1단계 건설 안(군 활주로 이용) 소요사업비

(단위:억원)

구분		금액	비고
Airside	토공(절·성토)	243.56	농경지 연약지반처리비용 포함
	포장공사비	189.70	유도로, 계류장
	배수시설	75.55	
	부대시설	39.62	
	접근도로	370.12	확장 및 신설(L=3.0km)
Landside	여객터미널	1,806.13	국제선, 국내선 공용 사용 구간 절감안
	주차장 및 내부도로	125.27	주차장, 내외곽도로
항행안전 시설	항행안전무선시설	48.60	VOR/DME, 민항을 위한 독립채널 반영
	항공등화시설	8.36	민항 유도로등 반영
상수 및 오수시설		10.21	
사업비 소계		2,917.12	
설계비		111.65	
감리비		103.51	
조사비		2.60	
환경보전비		20.42	
용지보상비		274.75	
장비·차량구입비		25.78	
예비비(10%)		343.01	
부가가치세(10%)		352.41	
총계		4,151.25	

자료: 「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(2022.09.)」, 141~143쪽

■ 2단계 확장 안(독립계기비행 제3활주로 건설 안) 소요사업비

■ 표 5-2 2단계 확장 안(독립계기비행 제3활주로 건설 안) 소요사업비

(단위:억원)

구분		금액	비고
Airside	토공(절·성토)	508.62	농경지 연약지반처리비용 포함
	포장공사비	501.16	활주로, 유도로, 계류장
	배수시설	572.44	
	부대시설	118.40	
	접근도로	335.60	확장 및 신설(L=2.0km)
Landside	여객터미널	841.75	국제선, 국내선 2단계 확장
	주차장 및 내부도로	23.47	주차장 및 내외곽도로 2단계 확장
항행안전 시설	항행안전무선시설	357.61	민항을 위한 계기착륙시설, 레이더, 기상관측 등
	항공등화시설	94.84	제3활주로 및 유도로 항공등화
상수 및 오수시설		3.60	
사업비 소계		3,357.49	
설계비		127.83	
감리비		119.14	
조사비		2.60	
환경보전비		23.50	
용지보상비		3,746.62	
장비·차량구입비		25.78	
예비비(10%)		737.72	
부가가치세(10%)		439.41	
총계		8,580.08	

자료: 「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(2022.09.)」, 141~143쪽

▣ 경기남부 민간공항 독립 신설 안 소요사업비

■ 표 5-3 경기남부 민간공항 독립 신설 안 소요사업비

(단위:억원)

구분		금액	비고
Airside	토공(절·성토)	1,492.46	농경지 연약지반처리비용 포함
	포장공사비	606.87	활주로, 유도로, 계류장
	배수시설	742.57	
	부대시설	168.02	
	접근도로	850.00	확장 및 신설(L=6.0km)
Landside	여객터미널	2,316.99	국제선, 국내선 분리 설치
	주차장 및 내부도로	125.27	주차장, 내외곽도로
항행안전 시설	항행안전무선시설	406.20	ILS, VOR/DME, 등 항행안전무선시설 1식
	항공등화시설	128.58	활주로 및 유도로 항공등화 1식
상수 및 오수시설		11.35	
유틸리티 배관		38.92	
급유시설		30.00	
사업비 소계		6,917.22	
설계비		261.47	
감리비		245.45	
조사비		2.60	
환경보전비		48.42	
용지보상비		2,483.36	
소음피해보상비		482.00	
장비·차량구입비		83.41	
예비비(10%)		1,044.05	
부가가치세(10%)		860.26	
총계		12,428.25	

자료: 「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(2022.09.)」, 141~143쪽